동작구의회공고 제2021-45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우리 동작구 내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·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인 "문화관광해설사"를 운영·지원하여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바람직한 문화관광의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, 직무 및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8조)
- 다.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, 제11조)
- 라.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지원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5조, 제16조)

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10월 12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

전문위원실(전화: 820-1715, FAX: 820-1474, E-mail: emrq0107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,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문화관광자원"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.
- 2. "문화관광해설사"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,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,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운영계획 수립·시행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(이하 "해설사"라 한다) 운영 및 지원계획(이하 "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해설사의 양성·배치·활용에 관한 사항
  - 2.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  - 3. 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-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, 문화관광자원의보유 현황.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소재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.
- 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외국인과 장애인의 관광 지원과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과 장애인 전담 해설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해설사의 자격)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.
  -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.
- 제7조(해설사의 직무)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- 1.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
  - 2.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
  - 3.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
  -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.
- 제8조(해설사 선발)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,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.
  -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,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

정한다.

- ③ 구청장은 선발·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9조(문화관광해설사증)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,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증(이하 "해설사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
  - ② 해설사증에는 발급번호,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.
  -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, 제식,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  - ④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, 해설사증을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.
- 제10조(교육)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·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운영)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 -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해설사 배치) ① 구청장은 해설사 배치 시 공정·객관·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1.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
  - 2. 해설사의 활동 태도 및 활동 실적
  - 3.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

- 4.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1.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,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
- 2.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
- 3.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- 제13조(활동실적관리) ① 구청장은 수시로 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해설사 배치 및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.
- 제14조(해설사의 해촉 등)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파단되는 경우. 경고 조치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  - ② 해설사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,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,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- 제15조(예산지원 등)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교통비,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
  - 2.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
  - 3.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

- 4.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
- 5.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쉼터 등 휴게시설 설치비용
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-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, 문화재,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,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- 제16조(위탁)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된 해설사 선발, 교육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- 제17조(표창)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- 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